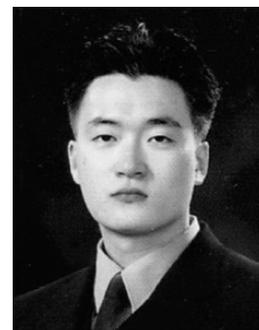


디자인을 공개할까? 비밀로 유지할까?

출원공개제도와 비밀디자인제도

김 응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한국특허아카데미 디자인보호법 전임
(2006년부터 2007년 7월까지)
합격의법학원 디자인보호법 전임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현) 리&목 특허법인 근무



I. 서설

지난 강의에서는 출원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신규성의제주장제도, 조약우선권주장제도, 보정제도 및 분할출원제도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번 강의에서는 출원인의 조치와 관련하여, 디자인의 공개 및 비밀유지에 관한 제도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를 실무상 출원공개제도 및 비밀디자인청구제도라고 한다. 전자는 출원계속 중 출원디자인을 디자인공개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는 것이고, 후자는 출원계속 중에 청구하여 설정등록 후 일정기간동안 등록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다.

출원공개제도와 비밀디자인청구제도는 출원디자인의 설정등록 여부와는 무관하다. 즉, 출원디자인에 대한 심사 진행 및 등록여부결정의 판명 등의 등록절차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출원공개제도와 비밀디자인청구제도의 실익은 무엇일

까? 바로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의 권리행사와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 전자의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업으로서 출원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출원계속 중의 제3자의 실시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출원공개제도는 출원인이 제3자에게 권리행사를 하기 전제적인 조치이고, 후자의 경우 출원디자인이 설정등록된 이후에 등록디자인을 일정기간 동안 비밀로 유지함으로써 제3자의 모방, 도용 등을 포함한 침해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상기 출원공개제도와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출원공개제도

1. 디자인보호법상 출원공개의 의의 및 취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출원디자인의 내용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그 효과로서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부여받기 위한 제도이다. 즉,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23조의2제1항) 이에 특허청장이 그 출원에 관하여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제23조의2제2항) 디자인보호법상 출원계속중에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출원인의 신청에 있는 때에는 디자인의 내용을 조기에 공개하고 그 효과로서 보상금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출원 단계에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허법 또한 출원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64조) 또한, 특허법은 신청에 의한 조기공개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법의 출원공개제도와 디자인보호법의 출원공개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특허법은 진보적인 기술사상에 대하여 독점배타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러한 기술사상을 만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제3자의 발명 동기화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출원공개제도는 특허출원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강제적인 공개를 하게 된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미적 외관에 관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만인에게 공개되는 경우 모방 및 도용이 용이한 디자인의 특성상 제3자의 침해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출원디자인을 강제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오히려 특허법상 특허출원인의 신청에 의한 조기공개제도가 디자인보호법상 출원공개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최근 개정법의 내용

2005년 7월 1일 시행법은 종래 심사등록출원인만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심사·무심사출원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출원공개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3조의2제1항) 이는 Web공보의 발행으로 공개신청 후 신속한 출원공개가 가능해졌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도 출원공개에 따른

법적효과(보상금청구권)에 의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하면 심사등록출원인 또는 무심사등록출원인 여부를 불문하고 출원공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3. 출원공개신청의 요건

(1) 주체적 요건

출원공개신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할 수 있다. 한편, 공동출원의 경우 출원공개신청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4조 준용 특허법제11조에 의하면 공동출원의 경우 출원공개신청은 각자가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와 디자인보호법 출원공개에 취지상 전원이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법적근거 면에서는 전자의 견해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지만 디자인보호법의 출원공개는 그 근본취지가 특허법의 출원공개와 상이하고,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므로 출원인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원이 함께 또는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객체적 요건

심사등록출원뿐만 아니라 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출원공개신청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청은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3조의2제1항단서) 예외적으로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방상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3조의2제2항단서) 특허청장은 제2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조의3)

(3) 시기적 요건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출원공개신청을 할 수 없다.(제23조의2제3항) 등록여부결정이 있는 후에는 출원공개의 효과를 향유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4) **협의불능 또는 불성립에 의해 거절 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특허청장은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제78조에 따른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된 디자인이 제2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의6) 이는 협의가 불성립되어 거절결정된 출원은 선원의 지위가 있어 이와 동일유사한 후출원은 등록불가하므로 이를 사전에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함으로써 선행디자인의 조사를 용이하게 하고 중복투자나 중복개발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4. 출원공개 절차

(1) 출원공개신청서의 제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2) 출원공개신청의 취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출원공개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3) 디자인공개공보 게재

특허청장은 공개공보에 디자인등록출원의 형식적, 실질적 내용을 모두 기재하며, 우선권주장의 사실과 함께 우선권증명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취지도 함께 기재하여 공개한다. (시행령 제1조의2제4항)

디자인공개공보에 기재되는 사항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의2.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취지(부분의장인 경우에 한한다)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라는 취지

2의2.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해당 등록출원을 모두 거절결정을 하였거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사실(법 제23조의6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6. 기본디자인의 표시

7.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8.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9. 창작내용의 요점

10. 디자인의 설명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 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5. 출원공개 효과

(1) 서면으로 경고할 권리의 발생

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는 후 그 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출원된 디자인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제23조의3제1항)

(2) 보상금청구권의 발생

출원공개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그 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시까지 기간동안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23조의3제2항) 보상금청구권은 당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제23조의3제3항) 보상금청구권은 등록 이전의 권리이므로 부당한 권리 행사에 의한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23조의3제4항) 간접침해 규정(제63조), 서류의 제출 규정(제67조),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 규정(민법 제760조) 및 민법상 소멸시효규정(민법제766조)이 준용된다. 출원공개 후 출원이 포기, 무효, 취하, 거절결정의 확정, 취소결정의 확정, 무효심결(후발적 무효사유 제외)의 확정 시에는 소급소멸한다.(제23조의3제6항) 한편, 설정등록일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한다.(제23조의3제5항준용 민법 제766조)

(3)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적용(제5조제3항)

출원디자인이 당해 출원을 한 날 전에 출원하여 당해 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등록공고 또는 제23조의6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타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우선심사신청

특허청장은 출원공개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출원을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제30조제1항준용 특허법 제61조제1호) 한편, 우선심사를 신청한 디자인등록출원 중 자기실시 중이거나 자기실시 준비 중임을 이유로 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결정은 사진, 견본 또는 카탈로그 등,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출원디자인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기타 자기실시 준비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자료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5) 출원디자인의 공개

출원디자인은 공개공보 발행일에 반포된 간행물에 의해 공지된 것으로 보아 신규성 판단의 인용디자인이 된다. 한편 출원공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가능하다.(제76조제2항)

(6) 비밀디자인청구를 한 경우

출원공개신청을 하면 비밀디자인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제13조제5항)

III. 비밀디자인청구제도

1. 비밀디자인제도의 의의 및 취지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13조제1항)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디자인을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디자인은 물품의 미적 외관이어서 타인의 모방 및 도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당해 디자인을 비밀로 함으로써 타인의 침해를 방지하고 제품의 사업화에 대한 준비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비밀디자인청구를 이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본 제도의 장단점의 이해를 전제한다. 타인의 모방 및 도용을 방지할 수 있어서 이후에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확보 등이 용이하며, 비밀기간의 연장 및 단축이 가능하여 실시시기의 적절한 선택이 가능하고, 예외적 열람이 가능하므로 권리의 이용 및 처분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점에서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에게 유익하지만, 과실추정 규정의 배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행사 시 사전경고의 필요 등으로 인해 침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고, 이의신청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어 권리소멸의 가능성이 커지며, 일반적인 디자인등록단계보다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고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에게 불리하므로, 당해 디자인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비밀디자인청구를 선택할 지를 현명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2. 최근 개정법의 내용

(1) 2005년 7월 1일 시행법은 비밀디자인청구된 디자인등록 출원은 등록 후 최대 3년까지 비밀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바, 그 기간동안 비밀디자인의 실제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해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장이 증명한 서면을 제시하도록 규정하였다.(제62조제2항 신설) 이는 비밀디자인은 그 디자인의 실제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비밀디자인 행사의 법적 신뢰성을 높이고, 제3자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 2007년 7월 1일 시행법은 비밀디자인 청구시기를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청구시기를 확대하였다.(제13조제2항) 이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처리기간이 점점 단축되어 가고 있고, 출원 시 예상치 못한 사유로 개발이 늦어지는 경우 등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하고 출원 시에 비밀디자인 청구를 하도록 한 현행법하에서는 출원 이후에 출원인이 디자인을 비밀로 해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비밀디자인청구를 출원시뿐만 아니라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할 수 있도록 그 청구시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비밀디자인청구의 요건

(1) 주체적 요건

비밀디자인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지정된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에 한한다.(제13조제1항 및 제3항) 설정등록 후 지정된 기간의 단축 및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권자이다. 따라서 실시권자, 질권자 등은 그 기간을 단축 및 연장할 수 없다.

(2) 객체적 요건

디자인등록출원 즉, 심사등록출원 또는 무심사등록출원 모두에 대해서 비밀디자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절차상 1출원으로 취급되는바, 이에

대한 비밀디자인 청구는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관해서 해야 한다.(제13조제1항단서)

(3) 시기적 요건

비밀디자인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때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록료가 면제된 때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는 때까지 할 수 있다.(제13조제2항) 비밀디자인청구에 의해 비밀로 할 수 있는 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이다.(제13조제1항) 그 지정된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는 있으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제13조제3항단서)

4. 비밀디자인청구의 절차

(1) 비밀디자인청구 절차

비밀디자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비밀디자인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비밀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비밀기간연장(단축)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7조제3항)

(2)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비밀디자인청구

기본디자인은 비밀디자인청구를 하지 않고 유사디자인에 대해서만 비밀디자인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반대의 경우도 같다) 이는 양 출원은 현행법 및 심사기준의 해석에 의하면 별개의 출원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3) 비밀디자인청구 이후 출원공개 신청 시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비밀디자인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제13조제5항) 이는 출원인이 출원공개신청을 하는 경우 더이상 출원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4) 등록결정서에 비밀보장기간 기재

특허청장은 비밀보장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디자인등록

결정서에 그 비밀보장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7조제2항)

5. 비밀디자인청구의 효과

(1) 비밀기간동안 디자인의 실질적 내용의 비공개

비밀기간 중에는 설정등록이 있어도 심사등록공보 및 무심사등록공보에는 서지적 사항만을 게재하고, 실질적 사항인 도면(사진 또는 견본 포함),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설명은 게재하지 않는다. 이후 비밀기간이 경과하면 실질적인 사항이 게재된 공보가 발행된다.(시행령 제1조의2)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실질적인 내용이 게재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모방이 불가능하게 되어 비밀디자인청구를 한 자는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등록요건 판단 시 인용디자인이 비밀디자인청구를 한 경우

신규성 규정의 적용 시 비밀디자인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는 신규성 판단의 인용디자인이 될 수 없다. 선출원주의 규정의 적용 시 비밀디자인청구를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일반적인 출원과 마찬가지로 선원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비밀기간동안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은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된다. 확대된 선출원주의 규정의 적용 시 선출원이 비밀디자인 청구를 한 경우 출원일 다음날부터 디자인의 실질적 내용을 담은 공보가 발행된 날까지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선출원된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을 참증으로 첨부하지 않고, 서지적 사항만이 게재된 공보 발행일 다음날 이후에 거절이유를 통지하며,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이후에 거절결정을 한다.

(3) 예외적 열람청구

특허청장은 ①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 ② 비밀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 의의신청, 심판, 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③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④ 법원 또는 심판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제13조제4항)

(4)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기간의 실질적인 연장

비밀디자인청구를 한 등록디자인에 대해서 의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부터 도면 등 실질적 사항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의의신청이 가능하다.

(5) 과실추정의 배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65조제1항본문) 다만,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과실의 추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제65조제1항단서) 이는 비밀디자인청구를 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이 비공개되었으므로 제3자와의 형평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밀디자인권자는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6)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의 행사

비밀디자인을 청구한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그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일,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를 할 수 없다.(제62조제2항)

한편, 2005년 7월 1일 시행법 이전에는 비밀디자인청구를 한 디자인권에 기하여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사전 경고가 요구되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었으나, 2005년 7월 1일 시행법에서는 디자인의 실질적인 내용이 비공개되는 비밀디자인권에 기해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의 법적 신뢰성을 위해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를 할 것을 규정하였다.

(7) 비밀누설죄(제86조)

특허청직원, 심판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비밀 청구한 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8) 비밀의 해제 및 실질적 내용의 공보 발행

비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비밀로 유지되었던 등록디자인의 도면,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과 같은 실질적 내용이 공보에 게재된다. 일반적인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출원계속중 출원공개가 없는 한, 설정등록 시에 공지가 되나, 비밀디자인청구를 한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비밀이 해제되는 시점에 공지가 된다.

V. 결어

디자인보호법상 출원공개제도는 출원인의 사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허공개공보

와는 달리 디자인공개공보는 기술의 진보를 위한 기술자료로서 공중에게 이용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 출원공개는 출원인이 출원계속 중 보상금 청구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그 전제조건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비밀디자인제도는 물품의 미적 외관인 디자인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출원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의 제도이다.

따라서 디자인 창작자 입장에서는 조속한 권리화와 사업시기의 조정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라 할 것이나, 차후 권리행사 면에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청구에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양 제도 모두 디자인의 모방용이성, 강한 유행성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비밀디자인청구는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함으로써, 출원공개제도는 디자인을 공개함으로써 보호한다는 점에서 방식상의 차이가 있다.

발명특허 2008, 8

